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은미 의원
- 제안일자 : 2024. 6. 5.
- 회부일자 : 2024. 6. 10.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평창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 범인 지원(안 제4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에서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에서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행령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재정지원 등)에서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홍보 및 교육)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자료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동 지원에 힘쓰도록 함.

5. 종합검토의견

- 현재 우리 군은 관외에 소재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¹⁾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참고]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내역

사업명	연도	사업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2022년	30,000천원
	2023년	30,000천원
	2024년	30,000천원

1) 우리 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는 영월군에 소재한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창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서 담당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